

서울특별시 금천구 모자보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재동 의원 발의]

의안번호	2400
------	------

발의일자 : 2023. 9. 5.

발 의 자 : 정재동 의원

찬 성 자 : 이인식 의원

1. 제안이유

상위법인 「모자보건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남녀도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난임 정의 규정상의 부부의 개념에 포함함으로써 출산을 장려하고 국가적인 초저출생 문제 해결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난임부부의 정의를 상위법령에 맞게 반영하고, 인용법령을 정비함(안 제2조제5호, 제6호, 제8호).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모자보건법」 제2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없음

다. 기 타

- 1) 현행 조례 : 별도 첨부
- 2) 신·구조문 대비표 : 별도 첨부
- 3) 입법예고 : 2023. 9. 6. ~ 9. 12.

서울특별시 금천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금천구 모자보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모자보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및 제6호 중 “대통령령”을 각각 “「모자보건법 시행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호 중 “부부가”를 “부부(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 4. (생 략)</p> <p>5. “미숙아”란 신체의 발육이 미숙한 채로 출생한 영유아로서 <u>대통령령</u>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영유아를 말한다.</p> <p>6. “선천성이상아”란 선천성 기형 또는 변형이 있거나 염색체에 이상이 있는 영유아로서 <u>대통령령</u>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영유아를 말한다.</p> <p>7. (생 략)</p> <p>8. “난임”이란 <u>부부</u>가 피임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부간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아니하는 상태를 말한다.</p>	<p>제2조(정의) ----- -----.</p> <p>1. ~ 4. (현행과 같음)</p> <p>5. ----- ----- <u>「모자보건법 시행령」</u>----- -----.</p> <p>6. ----- ----- ----- <u>「모자보건법 시행령」</u>----- -----.</p> <p>7. (현행과 같음)</p> <p>8. ----- <u>부부(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u> ----- ----- ----- -----.</p>

현행조례

서울특별시 금천구 모자보건 조례

[시행 2020. 12. 31.] [서울특별시금천구조례 제1138호, 2020. 12. 31., 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모성 및 영유아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건강한 출산 및 양육을 도모함으로써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산부”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의 여성을 말한다.
2. “모성”이란 임산부와 가임기 여성을 말한다.
3. “영유아”란 출생 후 6년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4. “신생아”란 출생 후 28일 이내의 영유아를 말한다.
5. “미숙아”란 신체의 발육이 미숙한 채로 출생한 영유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영유아를 말한다.
6. “선천성이상아”란 선천성 기형 또는 변형이 있거나 염색체에 이상이 있는 영유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영유아를 말한다.
7. “모자보건사업”이란 모성과 영유아에게 전문적인 보건의료서비스 및 그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모성의 생식건강 관리와 임신·출산·양육 지원을 통하여 이들이 신체적·정신적·사회적으로 건강을 유지하게 하는 사업을 말한다.
8. “난임”이란 부부가 피임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부간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아니하는 상태

를 말한다.

제3조(책무)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모성 및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해 조사·연구와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모자보건사업에 관한 정책을 마련하여 금천구민의 보건향상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세부계획의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모자보건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세부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세부계획에는 모성 및 영유아의 건강증진 방안과 이를 위한 정보제공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5조(모자보건사업) 구청장은 모성 및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모자보건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모성 및 영유아의 건강검진 등 건강관리 지원
2. 고위험 임신부,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의료비 지원
3. 난임 극복을 위한 상담 및 교육, 시술비 지원
4. 저소득 출생아에 대한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5. 임신부에 대한 건강 및 의학 관련 정보의 제공
6. 모자보건사업에 대한 정보제공 및 홍보사업
7. 그 밖에 구청장이 모성 및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임산부의 날) 구청장은 10월 10일 임산부의 날에 임신과 출산의 중요성을 북돋우기 위한 행사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7조(재정지원) 구청장은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사업 및 행사 등을 추진

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모자보건사업의 효과적인 시행을 위하여 관계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138호, 2020.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 모자보건법

[시행 2022. 6. 22.] [법률 제18612호, 2021. 12. 21.,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 12. 22., 2019. 4. 23.>

11. “난임(難妊)”이란 부부(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피임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부간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아니하는 상태를 말한다.